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4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8일

발 의 자 : 남창진, 우미경 의원(2명)

찬 성 자 : 우창윤, 김진철, 문영민, 김인제,
전철수, 이석주, 박운기, 유동균
의원 (8명)

1. 제안이유

- 건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차 빌딩 등은 높이가 일반 건축물의 10층에 달하는 40m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3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벽면 이용 간판” 설치시 1개 층으로 간주하여 10층 높이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 현행 조례상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한을 시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여 수거보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4조제4항),

-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함(안 제2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안 제28조제2항 중 “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u></p>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생략)</p> <p>② <u>구청장은</u>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구청장은</u> ----- ----- ----- ----- ----- -----.</p>

[관계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